

안녕하세요!

우리 매장의 동시 이용 가능한 인원은

사회적 거리 두기 **1** 단계에서는

최대 **1** 명입니다.



# 목욕탕·사우나에서의 생활방역수칙

아래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.

★ **코로나19 증상\*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** 

\* 주요증상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등

★ **출입자 명부**  QR 코드, 안심전화 등 작성하기

★ **항상 마스크**  착용하고, 공용공간, 탈의실 등 대화 자제하기

★ **가급적 짧게**  마무리하기

★ **이용자 간 2m (최소 1m) 이상**  거리두기

★ **음식 섭취하지 않기** 물, 무알콜 음료 제외



-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할 수 있음
-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과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[코로나19 홈페이지\(ncov.mohw.go.kr\)](http://ncov.mohw.go.kr)에서 확인하기

### Q.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?

-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「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, 「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」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.

#### <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>

보상종류	-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, 사망·장애일시보상금 및 장제비
보상대상자	-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(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-9호)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대상자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
보상신청 유효기간	-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
보상신청 가능 횟수	-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,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

### Q.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요?

-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 후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습니다.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접종 관련 증상으로 기침, 후각 또는 미각 손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.
- 이들 증상이 발생한다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 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.

##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



발열·호흡기 증상 등이 없는  
건강상태가 좋을 때  
예방접종 받기



15~30분  
예방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 
15~30분 머물며  
이상반응 관찰하기



예방접종 후 최소 3시간 이상  
안정을 취하고,  
최소 3일간 주의 깊게 관찰하기



39도 이상 고열이나 알레르기  
증상(두드러기, 발진 등) 및 이상반응이  
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 
의사의 진찰 받기

\*접종 부위 통증, 부기, 오한, 발열, 메스꺼움, 피로감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, 이는 수일 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.

**마스크 착용, 거리↔두기,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킵니다**

☑️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자세한 정보는 [코로나19예방접종.kr](https://www.kdca.go.kr)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!

2021.03.08.